

복지시설 운영규정

□ 제정 : 2011. 06. 01

□ 개정 : 2017. 05. 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 (이하“본교“라고 한다.) 학생 및 교직원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식당
2. 매점 및 커피숍
3. 음료자판
4. 테니스장
5. 야구장
6. 풋살구장

제1항 이외에 기타 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시설

제3조(운영의 기본방침) ① 복지시설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개인 또는 단체 활동을 위한 장소가 되게한다.

- ② 복지시설은 혜택이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한다.
- ③ 복지시설은 학생 및 교직원들의 편의생활과 활동에 도움이 되고 구성원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다.
- ④ 복지시설은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

제4조 (운영방침) 이 규정은 학생 및 교직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교육여건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방침을 세운다.

1. 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지시설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임대에 따른 특수조건 및 운영조건을 심의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위원은 조교수 이상 2인, 행정직 2인, 학생대표 2인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 또는 협의한다.

1. 시설운영 기본방침 및 주요제도 개선
2. 각종 시설물 설치
3.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의 개폐
4. 직영 또는 임대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록 작성 및 행정처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제정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